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6월 2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6월 2일

3. 제안이유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지대 위주의 공업화로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본도에 교통망등 양호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첨단기술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차량 정수이체에 따름.

4. 주요골자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 제5조(공무원)중 "필요한공무원21명"을 "필요한공무원23명"으로 함.

5. 검토의견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검토한 바,

관용차량 관리운영규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서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으로 관용차량 2대의 정수이체에 따른 공무원(운전원) 2명 증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4개월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93. 2월) 본 개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견하여,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 첨부

·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